

광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723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723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19가단5427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2. 10. 20.

판결선고 2022. 11. 2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19가단5427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개명 전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0.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2019. 11. 20. 접수 채권가액 10,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과 제12행의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 준재심의 소에 관한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위자료판결에 기한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이상 기판력에 따라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고,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정조서의 무효 여부 내지 조정조서 상채권의 변제에 따른 소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존재 내지 행사 여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피보전채권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역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판결에 기한 채권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와 같이 변제로 소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이상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역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사해행위 직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에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소송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 상당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제1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제1심 소송 진행 중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었던 사정이나, 이 사건 항소 제기 당시에는 준재심의 소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유 없는 항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유상호, 판사 송인경

별지